##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38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 안도걸·조인철·김문수

양부남 • 윤준병 • 정일영

주철현 • 박지원 • 박희승

전진숙 • 이개호 • 정진욱

신정훈 · 이재관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 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 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 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 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절의6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이라 한다)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전략산업제품이 최초로 판매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9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제품 판매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해당 제품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1. 해당 제품이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실시 될 것
- 3.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 ②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한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판매가 격 및 생산·판매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판매가 격 및 생산·판매수량의 산정 및 제출, 제2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의36(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
-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 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 다.
- 제3조(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0절의6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
	진을 위한 조세특례
<u> &lt;신 설&gt;</u>	제100조의35(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국
	<u>가전략기술</u> ,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
	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이라 한다)의 생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u>생산하여 2035년 12월 31일까</u>
	지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전략
	산업제품이 최초로 판매된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9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략산업제품 판매가격의
	<u>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을 해당 제품이 판매된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의 10을 한도로 한다.

- 1. 해당 제품이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 2.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실시될 것
- 3.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 로 사용될 것
- ②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제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 상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그 감가상각 비에 상당한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

<신 설>

상 제품의 판매가격 및 생산· 판매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판매가격 및 생산·판매수량의 산정 및 제출, 제2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6(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 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 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내 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에서 생산한 전략산업 제품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 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 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

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 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 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 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① (생략)

<신 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 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 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 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 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 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 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 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 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 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0 11	1 = 0 11/
①		
	 - <u>제9</u> 9조의12,	제100주

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 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 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 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 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 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 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 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 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

②
제99조의12, 제100조의
<u>35</u>
<del>_</del>
<b></b>

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 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 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 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 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